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35 발의연월일: 2024. 7. 19.

발 의 자:김기표・박범계・허종식

조인철 · 복기왕 · 허 영

정진욱・김 현・김 윤

김승원 • 전현희 • 이성윤

박홍배 • 박희승 • 민형배

김영환 · 최민희 · 위성락

문대림 • 이정헌 • 김용만

백승아 · 김주영 · 이기헌

의원(2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은 제27조 제4항에서 모든 국민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형사소송법 제198조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을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국가의 수사권이라는 가장 강력한 공권력에 비하여 방어권이미약한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에 앞서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않음으로써 국민의인권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형사절차를 구축하도록 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칙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형사절차는 수사단계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등의 우려를 이유로 구속수사를 하는 것을 광범위하게 인정하여, 이러한 수사단계에서의 구속은 나중에 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되더라도 낙인효과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잘못된 인식을 가져오며, 이로 인해 당사자는 사회적·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음.

이는 또한, 증거를 모두 확보하고 있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동안 도주하지 않고 성실히 수사에 임한 피의자에 대하여 갑자기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 또는 청구하여 구속하고,이를 수단으로 심리적, 신체적 압박을 하여 별건 수사를 하고 거짓자백을 유도하는 등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여, 실체관계와 전혀 다른 사실관계를 형성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았음.

이와 같이 수사단계에서의 구속은 낙인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실체와 다른 사실관계를 형성할 여지를 주는 수 단으로 전략하여 수사기관이 권한을 남용하고 결과적으로 정치에 관 여하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었음.

따라서 강력범죄나 마약범죄 기타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을 해하는 경우 또는 동일 범죄를 반복하여 행할 가능성이 높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절차에서의 구속은 적극 지양되어야 할 것이고, 이는 형사사법상 무기대등의 원칙의 실현에도 부합함.

또한 수사 과정에서의 인신구속도 문제지만, 재판 과정에서의 인신 구속도 개선이 필요함. 이미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던 피고인, 특히 무죄 주장을 하던 피고인의 경우 자신에게 어떠한 판결이 내려질지 모른 채 법정에 가서 선고를 듣고 법정구속되는 경우가 다반사인바,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벗어날 뿐만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으로 하여금 불확실한 선고 결과에 따라 매우 불안정한 지위에 처하도록 하는 반인권적인 제도의 운용임. 결국 '무죄추정'을 받는 단계에서 이뤄지는 확정판결 전 법정구속은 수사단계에서 이뤄지는 구속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고 헌법이 규정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것임.

이에 대부분의 범죄 특히 화이트컬러 범죄의 경우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의 원칙을 정립하여, 수사기관의 구속권한을 앞세운 부당한 권력 남용과 정치개입을 막고, 국민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고자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구속의 사유)

④법원은 공소제기 당시와 비교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 제201조 제1항제2호 각 사유의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으면 불구속상태의 피고인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확정되지 아니하는 실형의 선고는 현저한 사정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01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1조(구속)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 1. 범죄행위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범죄 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일 것
- 2. 제1호에 열거된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의 가능성이 현저하고 현존하거나, 동일 범죄를 계속하

여 저지를 가능성이 농후할 것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70條(拘束의 事由) ① ~ ③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법원은 공소제기 당시와 비		
	교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사		
	유, 제201조제1항제2호 각 사		
	유의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으		
	면 불구속상태의 피고인을 구		
	속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확		
	정되지 아니하는 실형의 선고		
	는 현저한 사정변경으로 보지		
	<u>아니한다.</u>		
第201條(拘束) ① 被疑者가 罪를	제201조(구속) ①		
犯하였다고 疑心할 만한 相當			
한 理由가 있고 第70條第1項			
各 號의 1에 該當하는 事由가			
있을 때에는 檢事는 管轄地方			
法院判事에게 請求하여 拘束令			
狀을 받아 被疑者를 拘束할 수			
있고 司法警察官은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로 管轄			
地方法院判事의 拘束令狀을 받			
아 被疑者를 拘束할 수 있다.			
다만, 多額 50萬원이하의 罰金,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충		
拘留 또는 科料에 該當하는 犯	분히 소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罪에 關하여는 被疑者가 一定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한 住居가 없는 境遇에 限한 <u>다.</u>

<신 설>

<신 설>

② ~ ⑤ (생 략)

- 1. 범죄행위가 「특정강력범죄 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2조에 규정된 범죄 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일 것
- 2. 제1호에 열거된 범죄가 아 닌 경우에는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의 가능 성이 현저하고 현존하거나, 동일 범죄를 계속하여 저지 를 가능성이 농후할 것
- ② ~ ⑤ (현행과 같음)